

다자간 공공갈등 조정과정 분석

: 울진 원전 주변 거주 문제 갈등조정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Mediation Process for Multiparty Public Conflict

: A Case Study of Uljin Community Conflict

전 형 준*

Jeon, Hyoung Joon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 III. 울진 공공갈등 개요
- IV. 울진 공공갈등의 조정과정 분석
- V. 토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30여 년간 원전 및 송·변전 시설에 둘러싸여 있던 주민들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이주 등을 요구하면서 표면화된 갈등사례의 조정과정을 분석했다. 생존권대책위원회(주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산업부, 울진군은 5자 협의체를 진행했으나 피해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는 미완의 합의에 머물렀다. 그러나 촉진적 조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 기관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예비조정단계, 조정단계, 합의안 도출단계로 구성되는 3단계 분석틀을 통해 분석했고, 최종 합의시까지 대부분의 이해관심사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BATNA가 이론에서 뿐 아니라 다자간 조정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자 협의체에서는 일방적 통보가 2회였고 명시적 합의는 없었던데 비해, 조정에서는 명시적 합의가 7회로 증가해 다자간 대화에서 협의나 협상보다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16. 5. 8, 심사기간(1, 2, 3차): 2016. 5. 8~2016. 6. 27, 게재확정일: 2016. 6. 27

- 주제어: 공공갈등, 갈등조정, 조정회의, 다자간 갈등 조정, 이해관심사, 바트나, 조정 커뮤니케이션

This study examines a public conflict mediation in Uljin Gun. The local people of Uljin Gun were surrounded by nuclear power plants and transmission lines for last three decades. They insisted that they were eligible to move to somewhere else all together in 2013. The local peopl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Uljin Gun negotiated; However, they discussed only launching a research to verify the eligibility of the moving. Through twelve facilitative mediation meetings, all the parties agr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o try to modify the law that made the moving impossible. This study has a framework of three steps: Understanding mediation, assessing the situation, and reaching agreemen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were considered through the meetings and BATNA was important in multiparty mediation.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showed that there were two times of one-way communication and no explicit agreement in the negoti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even explicit agreement in the mediation. It was found that mediation may be more effective than negotiation in multiparty public conflict.

- Keywords: public conflict, conflict mediation, mediation, multiparty public conflict, interest, BATNA, mediation communication

I. 서론

정부가 울진을 원전 부지로 정한 것은 1979년이다. 울진에는 1981년 한울 1호기가 착공된 이래 6기의 원전이 완공되어 가동 중이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대형 건설 사업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좋은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¹⁾

1) 예비조정단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지역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원전은 해안선을 따라 건설됐다. 건설 부지에 살던 사람들은 새로운 주거지에 집단이주되었고, 해안도로는 내륙 쪽으로 이설되었다. 원전 안에는 변전소가 건설되었고,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까지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가 건설되었다.

원전은 갈등을 발생시키는 비선호시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혜택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반면에 불안, 사고 위험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혜택과 피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은 종종 비선호시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 사항으로 언급된다. 1989년 6월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은 제정 이유로 바로 그 혜택과 피해의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다.²⁾ 발주법 제1조는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도 마찬가지여서 원전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고, 발주법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발주법에 따라 이미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울진군에 지급되었고, 매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서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지역발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발주법 제2조는 “주변지역”을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발주법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는다는 것을 추정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군수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는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의 배분이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받은 사업제안서가 그렇지 않은 사업제안서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다. 자연스런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불균형 상황이 초래됐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출입구 쪽이 더 발전하게 되고, 같은 조건이면 전망이 더 좋은 곳에 투자가 몰리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울진군 북면 신화1리에서 발생한 갈등³⁾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다자간 갈등조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전원개발사업은 그 사업규모는 크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환경공해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신화1리는 원전 주변마을로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은 과거에 비해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전과 송전선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집단이주를 요구했으나, 다른 당사자들

정회의가 조정 기제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정 회의에서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상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 커뮤니케이션은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커뮤니케이션 접근이 필요하다.⁴⁾

이 사례는 연구자가 조정인으로 실제 참여한 사례인데, 이처럼 직접 조정한 사례를 다룬 연구는 이선우·홍수정(2012)의 연구와 김광구·이선우(2011)의 연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II장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제III장에서는 갈등의 개요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밀양 송전탑 갈등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5자 협의체라는 조정 전 상황을 기술하였다. 제IV장에서는 예비조정단계, 조정단계, 합의안 도출단계로 구분한 갈등조정회의의 진행과정을 기술하였다. 특히 갈등조정회의 중에 어떠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V장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II.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1. 다자간 조정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방법은 크게 힘에 의한 방법, 권리에 의한 방법, 대화에 의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Ury, Brett, and Goldberg, 1988) 첫째, 힘에 의한 방법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 정보의 힘, 지위의 힘 등을 활용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공공갈등에 있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공권력을 써서 일방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권리에 의한 방법은 정부나 주민 등이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다자간 조정 사례는 세 번째 유형인 대화에 의한 갈등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 또는 복수의 조정인들이 이해당사자들의 대화를 촉진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조정인들의 역할은 과정의 설계와 원활한 진행

은 집단이주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4) 이런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Mehrabian (1972)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생략한다.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당사자들이 도출하는 경우를 촉진적 조정이라 한다(Susskind and Cruikshank, 1987).

최근 들어 공공갈등해결에 있어 조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높다(Folberg & Taylor, 1986; Edwards, 1986; Winslade & Monk, 2000; Goldberg, 2003). 실무적으로는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조정을 고려해 볼 것을 정부 차원에서 권유하고 있고(국무총리실, 2015), 학문적으로는 조정기제를 활용한 사례연구 등(박종화, 2001; 김두환, 2005; 김재근·채종현, 2009; 정정화, 2012, 함효상·현승현, 2013)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다자간 조정은 양자간 조정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다자간 조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적인 특징을 가진다.

우선 다자간 조정에 있어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심사는 양자간의 경우보다 더 많고 복잡하다. 이해관심사에 기반한 조정의 경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고자 하므로, 양자간 조정에 비해 다자간 조정은 훨씬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다자간 조정은 양자간 조정에 비해 훨씬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자간 조정에는 없는 일부 집단 간 우호적 협력이나 집단 간 역할 분담 등이 가능하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자간 조정에서는 조정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Moore, 2003).

다자간 조정이 진행될 경우, 각 집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Moore(2003)는 이를 관료적 구조(bureaucratic constituency)와 수평적 구조(horizontal constituency)로 구분했다. 관료적 구조는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 최종 결정권자가 집단 내에 상하관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하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갈등조정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수평적 구조는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특정한 소수가 아닌 경우이다. 마을 주민들 또는 시민단체들의 느슨한 연합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조정 참가자들은 총회 투표 등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집단 전체의 승인을 얻기도 한다(Moore,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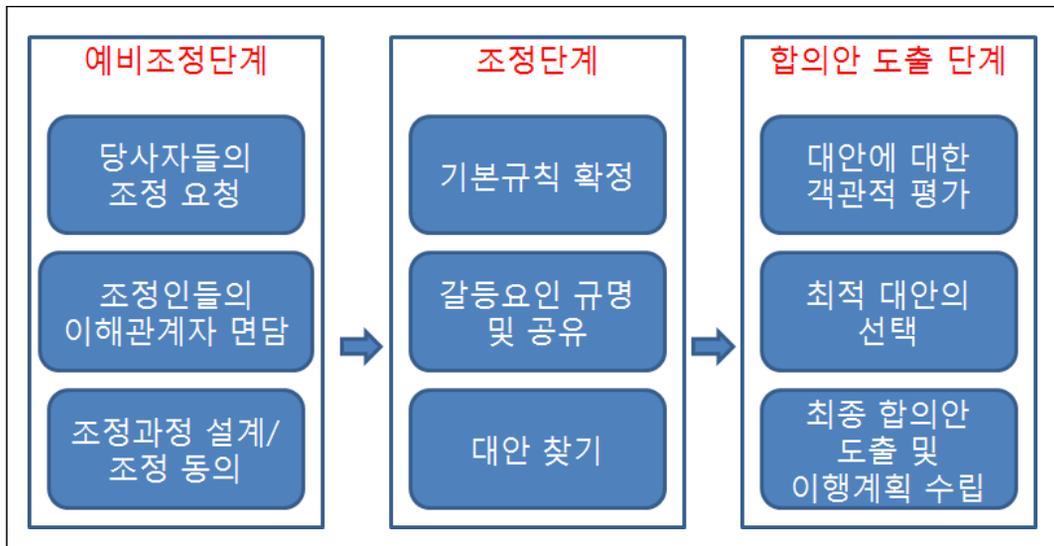
2. 연구의 분석틀

다자간 조정도 양자간 조정과 마찬가지로 예비조정단계, 조정단계, 합의안 도출단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Susskind & Cruikshank, 1987; Wall et al., 2001; 김재근·채종현, 2009; 김광구·이선우, 2011). 예비조정단계는 조정이 실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서, 조정 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조정 진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고,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심사를 파악한다. 조정단계는 실제 조정회의를 진

행하는 단계인데, 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각자가 자신들의 입장, 이해관심사, 우려사항, 감정적인 측면 등을 말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합의안 도출단계는 조정단계에서 도출된 대안들을 평가하여 최종 합의안을 만들고 이행계획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울진군 북면 신화1리의 다자간 조정을 3단계로 구분했고, 조정 참가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1차 자료인 당사자 면담 자료 14건, 회의록 12건 및 최종합의문 1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보도자료 1건을 분석했다. 회의록은 조정회의가 진행된 당일 조정인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다자간 회의의 특성상 1회 회의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양자간 회의에 비해 길게 진행됐는데, 회의 진행 중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직후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조정인이 초안을 검토했다. 그 후에는 당사자들도 회의록 초안을 바로 검토했고, 어느 한 당사자라도 회의록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 수정 회의록을 작성했다. 수정 회의록은 다시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람했으며, 모든 당사자가 수정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 회의록으로 간주했다. 최종회의록은 모든 당사자들의 확인을 거치고 서명을 받았다.

Ⅲ. 울진 공공갈등 개요

1. 사회적 배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밀양 송전탑 갈등

본 사례는 울진군 북면 신화1리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집단이주 요구 자체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원전에 대한 불안을 키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를 보여준 밀양 송전탑 갈등이 중요한 배경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17미터에 달했고, 원전 지역에 도달한 높이도 최대 13미터였다. 쓰나미 높이를 높게 예상하고 지어진 히가시도오리 원전, 오나가와 원전 등은 안전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국제 원자력 사고등급 중 최고인 7단계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쓰나미로 인해 원전의 전원 공급이 상실되었고, 전원이 상실되자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자 원자로가 가열되면서 용기 안에서 수소 폭발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하타무라, 아베, 후치가미, 2015).

우리나라에 비해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고, 안전의식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울진을 비롯한 원전 관련 지역에서는 불안감이 커졌다. 게다가 일본 당국이 정보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 수습에 있어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자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이러한 불안은 예비조정단계에서 신화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주민은 “후쿠시마로 (인해) 더욱 더 불안하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도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불안하다”고 했다.

한편, 밀양 송전탑 갈등은 우리나라 공공갈등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전은 밀양 이전까지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도입하고 있다.⁵⁾ 밀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조정회의 합의 사항 중에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결국 조정회의 몇 년 후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민들은 면담에서 송전선로로 인한 우려를 호소했는데 “송전탑과 선로에서 소리가 나서 무섭다”는 응답과 “비오는 날 밭에서 일할 때 소리가 나고, 송전선로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무서워 일을 못한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5)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갈등조정회의, 갈등영향분석 등을 시도했다.

2. 조정 시작 전의 상황: 5자 협의체

2013년 주민들은 원전과 송전선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을이 수십 년 간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집단이주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집단이주를 관철하기 위해 생존권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집회 및 시위를 했으며, 동시에 이해관계 기관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다. 주민들이 접촉한 이해관계 기관들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울진군이었기에 이들 4개 기관과 함께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생존권대책위원회가 논의하는 5자 협의체⁶⁾가 열렸다.

5자 협의체는 2013년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는데, 생존권대책위원회 3명, 한국수력원자력 2명, 한국전력 2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울진군 2명이 참가했다. 제1회 협의회에서는 “모든 조사나 보상 등은 현재의 법과 제도,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기본 방침이 협의되었고, “송전탑에 따른 소음, 진동 등 피해조사에 중점”을 두고, “20번 군도⁷⁾ 교통량 증가에 따른 통행 불편 대책 마련,” “통행차량 감축 및 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반사경, 방지턱, CCTV 등)”이 논의되었다.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약 20일 후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이해관계기관들에게 “집단이주 수용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 회신”을 요구했다. 즉 단기적으로 생활불편 최소화 대책, 피해조사 등을 요구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집단이주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차 회의에서 한수원과 한전은 집단이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한수원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신화1리의 사업 부지 편입”에 대해 당시 진행하고 있던 신한울 1, 2호기 건설사업에서 신화1리를 사업 부지로 추가 편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한전은 송전탑으로 인한 집단이주 사례 및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근거”가 없다는 한수원과 한전의 답변을 듣고, 주민들은 신화1리 집단이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참여자들은 송전탑 소음·진동 피해, 경제·사회적 피해, 고립되어 살 수 없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비용은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협의했다.

제4차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원자력 건설시(1978년)부터 조사 개시 시기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고, 인문사회, 경제, 지리(지형), 생활환경, 역학, 생태분야, 기타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 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는 신화리 주민이 조

6) 5자 협의체는 약 1년 간 11회 개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1차 자료인 협의체 회의결과 11건을 참조했다. 이 회의결과 11건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는 아니고,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었던 한 기관의 내부 보고자료이다.

7) 20번 군도는 원래 해안 도로였던 것을 원전 건설에 따라 이설한 것으로서 신화1리 마을 주민들의 거주지 중심부를 통과한다.

사위원으로 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한전이 부정적이었다.

제5차 회의에서 피해실태 조사용역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화되었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용역의 중립성을 감안하여 울진군이 발주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울진군은 이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답변하기로 했고, 울진군이 발주하지 못할 경우 한수원에서 주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생존권대책위원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용역 수행 내용으로는 신화리 주민 건강검진, 교통사고 장애, 암발병 및 질병사망 관련 조사, 발전소 건설로 인한 농토 수용 실태 조사, 원전 폐기물(증기발생기 저장고, 유리화설비 등) 영향 조사, 신울진 건설에 따른 우천시 피해대책,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및 불면증·공포 등 피해조사, 원전건설로 말미암아 해안가 도로가 마을을 양분하는 위치로 이설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에 대한 조사 등이 있었다. 한전과 한수원은 주민이 조사위원이나 보조원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의 객관성 유지 문제가 있어서 반대했으나, 5자 협의체가 용역의 조사방법, 방향, 조사 중간결과에 대한 열람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도 도출되었는데,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울진군, 경찰서, 한수원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협의되었다. 또한 송전탑의 소음 및 야간 눈부심 문제를 한전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제6차 회의에서 울진군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용역을 주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역 주관은 한수원이 하기로 했다. 5자 협의체에 참가한 각 기관은 각각 담당자를 지정해 용역 제안서를 1개월 내로 작성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부지에 신화1리를 편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7차 회의에서는 한수원이 작성한 피해실태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안에 대해 각 기관별로 검토 후 수정·추가 사항 등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협의되었다.

제8차 회의에서는 용역 과업지시서(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이루어졌으며, “신화1리 마을의 원전 및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실태 및 영향조사”라는 제목으로 5자 협의체가 발주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제9차 회의에서는 용역 발주주체 및 발주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졌다.

용역 과업 범위는 제10차 회의에서 다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 증기발생기 저장고, 유리화 설비, 골프장, 변전실(2기) 등을 조사 과업 범위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수원은 이 시설들이 규제기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시설로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 결국 논란 끝에 생존권대책위원회가 요구한 과업범위는 신화1리에만 국한하여 신화1리와 발전소 경계부분에서만 조사하기로 결론이 났

다. 이 10차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참관을 했는데, 권익위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문가 자문을 위해 생존권대책위원회와 한수원이 각각 1개의 전문업체를 추천하기로 했고, 이 전문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제10차와 제11차 회의 중간에 전문업체 2곳은 신화1리를 방문해 이해관계 기관들을 만나서 과업지시서(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자는 초청받은 두 전문업체 중 한 곳의 전문가 자격으로 올진 갈등의 이해관계기관 대표들을 이날 처음 만났다. 관계기관 대표자들은 과업지시서(안)을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것만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고자 한다는 말을 했다. 과업지시서(안)을 현장에서 받아 검토한 연구자는 이 안에 따라 연구가 진행된다면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때 연구자가 제기한 질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생존권대책위원회에게 한 질문이었는데, 만약 연구 결과 피해가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생존권대책위원회의 대표는 그렇다면 또 다른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연구자가 제기한 또 하나의 질문은 한수원과 한전에게 한 질문이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왜 이 연구를 추진하려고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는 이 때 갈등조정회의에 대해 소개하고, 조정을 통해 신화1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조사 연구 용역은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다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

제11차 회의에서 한수원은 과업지시서를 준비하는 용역비만도 2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보다는 갈등관리전문가를 통한 갈등조정⁸⁾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립성을 갖춘 제3의 전문가 조정을 통해 상호 승-승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 것이었다. 한전도 한수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올진군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고, 주민들은 갈등조정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최종 판단은 주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회의 결과 주민들은 6월 10일까지 주민총회를 거쳐 갈등조정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수용이 된다면 6월 중 착수하며, 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피해실태조사 용역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5자 협의체의 운영 및 결정사항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조정과정의 분석틀을 준용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이해관계기관들은 갈등조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더 익숙하게 여겨서 주로 사용했다. 그래도 이해관계기관들이 사용한 “중립성을 갖춘 제3의 전문가 조정”이라는 표현과 “상호원-원하는 합리적 방안”이라는 표현은 조정의 핵심을 잘 나타내는 것이었다.

<표 1> 5자 협의체 회의결과 자료 분석

단계	협의 차수	날짜	협의 내용	조치 사항	커뮤니케이션 특징
예비 협상 단계	1	2013.9.11.	안전: 송전탑 피해 및 20번 군도 문제 기본 방침: 모든 조사나 보상 등은 현재의 법과 제도, 원칙에 따라 진행		쌍방향적 협의
본 협상 단계	2	2013.9.30.	안전: 단기적 생활불편 최소화, 장기적 집단이주 병행 추진 주민: 집단이주 수용여부 가부 결정 회신 요구		일방향적 통보
	3	2013.11.7.	안전: 집단이주에 대한 타당성조사(피해실태 조사) 용역 한수원·한전: 집단이주 수용 불가 회신		일방향적 통보
	4	2013.11.20.	논쟁: 피해실태 조사 용역에 신화리 주민이 참여하는 것의 적절성 협의: 피해실태 조사의 영역과 기간 범위		쌍방향적 협의
	5	2013.12.6.	주민: 농도 수용실태, 건강, 방사선 등 구체적 피해실태 조사 수행 범위 제시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설치 논의 협의: 피해실태 조사비를 한수원·한전이 부담	한전이 송전탑의 소음 및 야간 눈부심 문제 조치	쌍방향적 협의, 첫 조치 사항 도출
	6	2013.12.20.	주민: 신한울 3, 4호기 사업 부지에 신화1리 편입 요구 협의: 피해실태 조사 용역제안서 1개월 내 작성		쌍방향적 협의
	7	2014.1.22.	과속카메라 조속히 설치	피해실태 조사 용역 주관을 한수원이 하기로 함.	쌍방향적 협의, 조치 사항
	8	2014.2.21.	피해실태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한수원: 신한울 3, 4호기 부지편입계획 설명	피해실태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제목 합의	쌍방향적 협의, 조치 사항
	9	2014.3.3.	피해실태 조사 용역 발주주체, 발주방법 등		쌍방향적 협의
	10	2014.3.28.	논쟁: 용역 과업 범위 국민권익위: 전문가 자문 권고	피해실태 조사 용역 과업 범위를 신화1리로 국한 합의	쌍방향적 협의, 조치 사항

단계	협의 차수	날짜	협의 내용	조치 사항	커뮤니케이션 특징
합의안 도출 단계	비공식	2014.5.9.	전문가 자문 의견		
	11	2014.6.3.	갈등조정 논의		쌍방향적 협의
	주민 총회			갈등조정 수용 합의	

IV. 울진 공공갈등의 조정과정 분석

5자 협의체의 이해관계 기관들이 한 달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후, 피해실태조사를 주관하던 한수원이 갈등조정회의 추진을 주관했다. 한수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의뢰하여 총 3인의 조정인을 선정했다. 연구자는 이 3인 중 1인으로 조정과정 전체에 참여했다.

전체 조정 기간을 예비조정단계의 시작으로부터 최종 합의문 작성까지로 보면,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145일이다. 조정 기간을 분석틀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면, 예비조정단계는 2014년 6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51일)로 볼 수 있고, 조정단계는 제1차 회의일(8월 20일)부터 9차 회의일(10월 29일)까지(71일), 합의안 도출단계는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23일)로 볼 수 있다. 94일 동안 12회의 회의가 열렸으므로, 약 8일에 한 번의 빈도로 회의가 개최된 셈이었다. 조정회의 운영 및 합의사항은 조정과정의 분석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다자간 갈등조정회의 과정 및 합의 내용 분석

단계	조정 차수	일시	협의 내용	합의 내용	커뮤니케이션 특징
예비 조정 단계	사전		조정인들이 모든 이해관계 기관을 방문해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입장, 이해관심사 등을 파악함.		양방향적 소통
조정 단계	1	2014.8.20.	조정회의에 대한 기대 나누기	기본규칙, 회의 개최 주기 등	명시적 합의
	2	2014.8.27.		대표성 확인, 실농비 관련 사실 확인	명시적 합의
	3	2014.9.2.	집단지주의 범·제도적 타당성	현행법상 집단이주 불가 확인	명시적 합의
	4	2014.9.16.	삶의 질 개선 방안 논의		양방향적 소통

단계	조정 차수	일시	협의 내용	합의 내용	커뮤니케이션 특징
	5	2014.9.23.	도로 안전 확보 방안, 전자파·방사능 안전 우려 논의		양방향적 소통
	6	2014.9.30.	집단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	안전교육·훈련, 전자계 관련 생태학적 역학조사	명시적 합의
	7	2014.10.10.	한전은 1회성으로 건설사업 관련 특별지원금이 가능함을 설명		양방향적 소통
	8	2014.10.17.		소음 측정 기관을 다음 회의에서 확정	명시적 합의
	9	2014.10.29.	효율적인 방사능 감지기 논의	안전교육 일정 잡기	명시적 합의
합의안 도출 단계	10	2014.11.7.	최종합의문 초안 검토		양방향적 소통
	11	2014.11.13.	최종합의문 초안 검토		양방향적 소통
	12	2014.11.21.		최종합의문 완성	명시적 합의

1. 예비조정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1) 당사자들의 조정 요청

본 사례의 이해관계 기관들이 이미 5자 협의체를 통해 1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것은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동시에 갖도록 했다. 긍정적인 시각의 핵심은 당사자들만의 대화로는 해법이 나오지 않으니 전문가인 제3자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었다. 즉 1년 동안 이해관계 기관들이 5자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피해실태 조사를 하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합의 사항이 없었고, 그 피해실태 조사라는 것도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추진되는 것이지 갈등 해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한편 부정적인 시각의 핵심은 이렇게 계속 대화만 해서 뾰족한 해법이 나오겠느냐는 우려였다. 마을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고령인 상황에서 지난 1년을 5자 협의체하면서 보냈는데, 조정회의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겠느냐는 인식이었다.

이해관계 기관들이 이런 상황에서 조정을 요청하게 된 것은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BATNA)⁹⁾에 해당하는 피해실태 조사가 모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9) 합의 형성을 위해서 힘, 권리, 이해관심사에 기반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Fisher, Ury, and Patton (1987)의 구분이다. 이 중에서 이해관심사에 기반한 접근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조정이다. 조정에서 BATNA란 회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즉 합의에 실패한 경우), 어느 한 이해당사자가 다른 상대방들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한다. 주민들에게 있어 피해실태 조사는 한수원·한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BATNA는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미

의미였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항상 주장했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조사에서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한전과 한수원 역시 피해실태 조사 결과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더불어 조정인들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전체 조정 과정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수원과 한전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조정인들이 한수원·한전에 유리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었지만, 중립성을 표방한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조정인들은 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설명을 했고, 만약 조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조정을 중단하고 피해실태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2) 조정인들의 이해관계자 면담

3인의 조정인은 예비조정단계의 첫 번째 과정으로서 이해관계 기관 면담을 시작했다. 이해관계 기관으로는 5자 협의체에 참가했던 5개의 기관을 선정했다. 각 기관의 면담 횟수는 주민 5회, 울진군 2회, 한수원 4회, 한전 2회, 산업부 1회 등 총 14회였고, 면담에는 약 1달이 소요되었다. 주민 면담의 경우 생존권대책위원회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다수 면담했다. 조정인들이 면담 결과 파악한 이해관계 기관 별 쟁점과 입장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예비조정단계에서 파악된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 기관 별 입장 분석

기관 \ 쟁점	주민	울진군	한수원	한전	산업부
방사능 안전	평상시 불안		안전함		안전함
원전 고장 우려	고장 빈도 낮추기, 사고시 안전 대책		원전은 안전함, 사고시 준비된 대응 실시		안전함
전자파 안전	건강상 우려			안전함	안전함
재산권 침해	지가 하락				
실농비 지원	보상 필요		지자체 위탁 사안		
지정학적 독특성	존재함	형평성 고민	형평성 고민	형평성 고민	형평성 고민
집단이주 타당성	타당함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피해실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한수원·한전이 주민들에게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조정 회의가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주민들 뿐 아니라 한수원과 한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었다.

기관 \ 쟁점	주민	울진군	한수원	한전	산업부
법과 원칙	법과 원칙 수용	법과 원칙 중요	법과 원칙 중요	법과 원칙 중요	법과 원칙 중요
주요 해결 주체 인식	한수원, 한전, 울진군	한전, 한수원	울진군, 한수원, 한전	울진군, 한수원, 한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있어서, 대화의 초점을 입장이 아닌 이해관심사에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입장은 종종 상반되어 합의에 이르기 어렵지만, 이해관심사들은 동시에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조정인들이 사전에 추정한 이해관계 기관별 이해관심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예비조정단계에서 추정한 주요 이해관심사

기관 \ 쟁점	주민	울진군	한수원	한전	산업부
방사능 안전	건강한 삶		오해 불식		
원전 고장 우려	건강한 삶		오해 불식		
전자파 안전	건강한 삶			오해 불식	
재산권 침해	삶의 질 향상				
실농비 지원	삶의 질 향상				
지정학적 독특성	주변 마을과의 형평성				
집단지주 타당성	마을 공동체 유지	법과 원칙	법과 원칙	법과 원칙	법과 원칙
법과 원칙	명예와 존중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3) 조정과정 설계와 조정 동의

개별 면담 내용 분석이 끝난 후, 조정인들은 문제해결 과정을 설계했다. 설계를 마친 후, 이해관계 기관들에게 설계안에 대해 설명한 후, 조정 회의 진행에 대해 모든 기관들의 동의를 얻었다. 조정인들이 설계한 문제해결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정인들은 분배적 접근 대신에 통합적 접근을 추구했다.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면 상대는 손해를 보는 분배적 접근 대신에, 모두의 이해관심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둘째, 조정인들은 촉진(facilitation)에 가까운 조정을 추구했다. 이해관계 기관들 중에는 조정인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도 비공식적으로 있었으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해관계 기관이 알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정인들은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보도록 요청했다.

2. 조정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조정회의는 총 12차례 개최되었는데, 회의 장소는 신화1리 마을회관, 한수원 회의실, 울진민간환경감시센터 회의실 등이었다. 회의 시간은 매회 약 4시간이었으며, 서울과 세종시 등지에서 오는 참가자들을 고려해서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진행되었다.

1) 국면 1: 기본 규칙 확정

2014년 8월 20일에 제1회 갈등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첫 회의 장소는 신화1리의 마을회관 2층이었고, 주민 대표 4명, 한수원 대표 4명, 한전 대표 4명, 울진군 대표 3명, 산업부 대표 1명,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 3명, 조정인 3명 뿐 아니라 주민 등 6인이 배석해서 총 참석 인원은 28명이었다.

조정인들이 우선 갈등조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고, 각 기관의 대표자들은 조정회의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가장 먼저 다룬 안건은 기본 규칙안이었다. 기본 규칙안은 회의의 명칭과 목적, 구성, 진행방법, 의사결정 방법, 개별회의, 비공개성, 회의결과의 전달 및 홍보, 회의 예절, 기록, 회의 개최 주기, 자료 공유, 합의, 최종합의문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의 명칭의 경우, 논의 끝에 “신화1리 현안(집단지주 포함) 갈등조정회의”로 했다. 회의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집단지주”라는 단어를 넣느냐 빼느냐는 논쟁거리였다. 결국 괄호 속에 넣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기본 규칙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대표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회의 개최 주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빠른 결론을 원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대표들 간의 합의를 통해 기간, 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한 기본 규칙에 대해서는 주민, 한수원, 한전, 울진군, 산업부의 대표 16명과 조정인 3명이 모두 서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참여한 이해관계 기관에서 동의한 내용을 서명한 것에 대해 명시적 합의라고 분류했다.

2) 국면 2: 갈등요인 규명 및 공유

제2차 회의에서는 대표들의 대표성 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에 대해 검토하고, 주민, 울진군, 한수원, 한전의 대표들이 대표성을 가진다는데 이해관계 기관들이 합의했다.¹⁰⁾ 제2차 회의의 주요 안건은 실농비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었다. 회의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10) 산업부는 사전 양해에 따라 일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같았다. 첫째, 주민들이 농업기반 상실을 문제 삼는 이유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 둘째, 울진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울진군은 30여 년 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당시 신화1리 주민들이 소유했던 전체 농토 중 원자력 부지에 편입된 농토의 비율 등의 근거 자료를 산하기관(북면)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했다. 넷째, 실농비와 관련하여 “한울원전 건설 당시 실농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울진군에서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 액수가 20억원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추정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생존권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 기관 대표자들이 확인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 주요 안건은 집단이주의 타당성이었다. 주민들이 요청했던 것 중에 전원개발사업부지로의 편입을 통한 집단이주가 있었는데, 한수원은 이에 대해 신화1리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부지로부터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시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대설비부지, 사택부지 등의 경우에도 이미 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편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건설과 관련해서 집단이주는 법에 없다고 설명하며, 전원개발촉진법이나 송전선로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이주 또는 주택매수청구권은 가능하다는 응답을 했다.

산업부는 원전 수용성과 관련하여 주민 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1리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표명을 했지만, 집단이주는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집단이주가 현행법상 안 된다니 답답하다고 말하며, 집단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각 기관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화1리는 원전에 최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과 절박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표현을 했다.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표들 모두는 현행법상 집단이주는 불가함을 확인했다. 집단이주의 문제는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들이 회의 명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쟁점이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것이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에 모든 참여자들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이후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국면 전환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행법이 아니더라도 집단이주가 가능한 방법과 근거를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향후의 논의 방향으로 정했다.

3) 국면 3: 대안 찾기

제4차 회의에서는 과거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살고 싶은 포근한 전원마을”로 신화1리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다. 크게 3가지의 주제가 논의되었는데, 첫째는 도로 안전,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 셋째는 건강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도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도로 문제로 인해 신화리 주민의 고통이 막대하다”는 말도 주민 대표로부터 나왔다. 한수원, 한전을 이해관계 기관으로 하는 조정회의에서 도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기 어려운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문제는 5자 협의체에서도 가장 먼저 다뤄졌던 주제였다. 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맥락은 이 도로가 원래 해안도로였는데, 원전을 건설하면서 신화1리를 관통하도록 이설되었다는 데 있다. 신화1리는 집성촌으로서 마을 내 왕래가 잦았는데, 도로를 건너다보면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원전의 추가건설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던 것이다. 주민들은 도로를 이설하든지, 마을 차량 외에는 통행을 금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 등을 했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원전 시범마을을 만들어 한수원의 홍보 사업의 일부로 하는 아이디어부터 원전에서 신화리 쪽으로 새로운 문을 만들어 신화1리의 가치를 높이는 말 등이 나왔다.

제5차 회의에서 주된 논의사항은 안전문제였다. 도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설, 공사차량 우회, 신호등 설치 등이 논의되었고, 그 외에도 전자파에 대한 안전, 방사능에 대한 안전 우려 등이 논의되었다.

제6차 회의의 주된 논의사항은 신화1리 주민의 집단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안이 보편성을 가지고,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소급 적용의 문제 등이 매우 중요함에 대해서도 대표자들이 공감했다.

이 회의에서 울진군은 그동안 노력해서 찾은 생활기반 상실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했는데, 현존 자료를 가지고는 생활기반 상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합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울진군이 주민들과 협의하여 안전교육 및 훈련을 10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둘째, 한전에서 5차 회의 때 제시한 전자계 관련 생태학적 역학조사¹¹⁾를 주민들이 수용하기로 했다. 셋째, 한수원은 휴대용 방사능 감지기의 구입에 대해서 신화1리에 가장 적절한 수준의 기기를 울진군과 협의하

11) 한전 측 관계자는 전자계 생태학적 역학 조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5개월의 기간에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로서, 조사 지역 일대 전자계 환경 조사, 개인별 전자계 노출 조사, 개인별 설문조사, 개인 면담을 통해 유병률 등을 조사한 후, 해당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대조지역으로 설정(송전탑만 없고 나머지 조건은 유사)해 비교 조사를 실시하는 것.

여 지원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제7차 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전자계 관련 생태학적 역학조사의 진전사항을 논의했다. 6차 회의에서 7차 회의 사이의 기간 동안, 전자계 관련 생태학적 역학조사에 대해서 한전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팀 10곳의 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는데, 주민들은 검토 후 1순위 연구팀과 2순위 연구팀을 정해 한전에 통보했었다. 한전 측에서 1순위 연구팀에 문의한 결과 일정상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고, 2순위 연구팀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 이 상황에서 진행된 제7차 회의에서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들은 방사선에 대한 생태학적 역학조사를 전자계 관련 생태학적 역학조사와 동시에 추진하거나, 적어도 설명회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요청했다. 한수원 측에서 방사능 전문가를 전자계 관련 생태학적 역학조사 설명회 때 참석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생존권대책위원회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자계 관련 생태학적 역학조사의 일정 역시 불명확해졌으므로, 2순위 팀에 맡기는 문제 역시 불확실해졌고, 한전 측은 2순위 팀에 요청했던 설명회를 취소했다.

이해관계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조정인들은 울진군에서 제공한 자료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하여 신화1리의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살고 싶은 포근한 전원마을”로 신화1리를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 기관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한전은 1회성으로 건설사업 관련 특별지원금이 가능함을 말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의지가 있다고 표명했다. 한수원은 지원 규모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러 해를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신화1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8차 회의에서 송전탑 소음과 생태학적 역학조사, 안전 교육이 논의되었다. 우선 송전탑 소음과 관련해서 측정 기관을 다음 회의 때 확정할 수 있도록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들이 마을 주민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전자계 및 방사선에 대한 생태학적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주민 측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화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경우 울진군에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는데 회의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방사능 감지기 지원의 경우에도 다음 회의 때 확정하기로 했다.

“살고 싶은 포근한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한전은 제7차 회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고, 한수원은 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 등이 중요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형평성이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제안했다.

제9차 회의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 세 가지가 논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울진군은 생존권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하여 일정을 잡기로 했

다. 둘째, 방사능 감지기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저가의 감지기는 오작동의 우려가 있고 고가의 경우 효율성의 우려가 있어, 신뢰할만한 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가져가서 측정하고 설명하겠다고 발언했고,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신화1리 마을회관 앞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 전까지 양측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셋째, 소음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소음만 따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고생하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전자계, 방사선 등을 포함해서 접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소음 조사일정은 논의되지 못했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로 문제,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사업이 논의되었다. 한수원이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이 제시한 것은 공사차량 통행 및 직원 출퇴근 등을 위한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신한울 3, 4기 공사가 시작되면 토목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에 따라 덤프트럭의 수가 늘어날 것이 예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전용도로 건설에 동의했다.

새로 건설되는 도로를 20번 군도와 접도하는 문제는 위의 공사전용 도로를 공사가 끝난 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느냐의 문제였다. 제9차 회의에는 울진군 의원이 참석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울진군과 군의회, 한수원, 주민 등이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향후 실시계획승인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이었다.

주거환경 및 소득 증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수원, 한진 측과 생존권대책위원회 측이 인식차가 있음을 확인했고, 차기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3. 합의안 도출단계의 커뮤니케이션

1) 국면 4: 대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제10차 회의와 제11차 회의에서는 갈등조정회의 최종합의문의 초안을 검토했다. 제11차 회의 결과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한수원, 한진, 울진군은 각 기관의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신화1리 지원을 특별재원¹²⁾으로 할 것을 본사에 요청하고, 그 답을 제12차 회의 전에 조정인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제12차 회의는 2014년 11월 21일에 한수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합의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언론홍보 등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하며, 언론홍보 창구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조정인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생존권대책위원회로 언

12) 주민들이 특별재원을 요구한 이유는 통상적인 지원사업 재원에서 지원금이 나갈 경우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 따라 이웃 마을들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론 인터뷰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기초로 응대하기로 했다. 서명식 등 후속행사는 5개 기관 모두 원하지 않음에 따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2) 국면 5: 최적 대안의 선택

대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최적 대안의 선택은 울진 갈등조정회의의 경우에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해관계 기관들 중에 한수원과 한전은 대안을 제시하는 측이었고, 생존권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은 대안을 평가하는 측이었다.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마지막 회의 때까지 생존권대책위원회에 어려운 과제로 보였다. 한수원과 한전이 제시한 대안이 과연 생존권대책위원회를 위한 최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사 사례들이 존재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생존권대책위원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신화1리의 상황은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최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결국 생존권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은 제10차 회의에서부터 제12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수원이 제시했던 기존 지원사업 사례, 한전이 제시했던 기존 지역지원사업 사례 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3) 국면 6: 최종 합의안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최종 합의문은 2014년 11월 21일에 작성되었다. 최종합의에 대해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그간의 협의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과 본 연구의 내용은 상치되지 않았다. 최종합의서의 주요 내용 중 주거환경 및 소득증대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도자료¹³⁾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그 외에 도로, 건강, 중장기적인 법률 개정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합의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음.

주민들이 가장 우려한 도로안전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 공사용 및 직원 차량에 대한 우회도로를 건설하기로 함.

13) 국민대통합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공동 배포의 형식으로 2014년 11월 24일 제공된 보도자료로서 “신한울 원전 주변지역 주민갈등, 조정으로 해결: 송전철탄과 원전건설로 인한 30년 주민 고통, 대화로 풀어내”라는 제목이었다.

방사능과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마을주민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소음수준을 정확히 측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중장기 과제로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 법률안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합의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했다.

V. 토론 및 시사점

이 사례는 30여 년간 원전 및 송·변전 시설에 둘러싸여 있던 주민들이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이주 등을 요구하면서 표면화된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된 것을 보여준다.

이 사례의 첫 번째 의의는 당사자 간의 협의보다 제3의 전문가가 개입한 조정이 다자간 대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관계 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5자 협의체와 갈등조정회의는 동일했다. 그러나 5자 협의체는 매달 한 번 꼴로 개최되었던 데 반해 갈등조정회의는 매주 한 번 꼴로 개최되었다. 개최 주기 뿐 아니었다. 5자 협의체가 피해실태 조사라는 미완의 합의에 머물렀던 데 반해 갈등조정회의는 좀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루었다. 단기적으로는 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건강 검진 등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며, 도로와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성과를 낳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안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도달했다. 총 대화 기간도 5자 협의체가 약 1년이었던 데 반해, 갈등조정회의는 5개월이었다.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5자 협의체에서는 11번의 공식 회의 중에서 일방적 통보가 2회, 쌍방향적 협의가 9회였고, 기관 별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게 4회(36%)이고, 당사자들이 서명한 명시적 합의는 없던 데 반해, 갈등조정회의에서는 12번의 공식 회의 중에서 명시적 합의가 7회(58%)로 증가했다. 또한 5자 협의체에서는 집단이주의 타당성에 대해 일방향적 통보로 소통이 된 반면에, 갈등조정회의에서는 4시간에 걸친 논의를 하고, 현행법상 집단이주가 불가함을 모든 이해관계 기관들이 합의했다.

최종 합의시까지 고려된 이해관계 기관들의 이해관심사는 <표 5>와 같다. 이해관심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갈등조정 목표이지만, 이 사례에서는 생존권대책위원회(주민) 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 기관들의 이해관심사들도 추상적 가치인 측면이 있어서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해관심사의 충족 대신에 최종 합의시까지 이해관심사가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지를 대신 정리했다.

<표 5> 최종 합의시까지 고려된 주요 이해관심사

이해관심사 \ 기관	주민	울진군	한수원	한전	산업부
건강한 삶	○				
삶의 질 향상	○				
주변 마을과의 형평성	-	-	-	-	-
마을 공동체 유지	○				
명예와 존중	○				
법과 원칙	○	○	○	○	○
절차적 정당성	○	○	○	○	○
오해 불식			△	△	

※ ○: 고려, △: 부분적 고려, -: 판단하기 어려움

최종 합의시까지 건강한 삶, 삶의 질 향상, 마을 공동체 유지, 명예와 존중, 법과 원칙, 절차적 정당성은 고려되었다. 다만 한수원과 한전이 관심 있었던 방사선과 전자파에 대한 오해 불식의 경우,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방사선과 전자파에 대한 주민 불안감도 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주변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는 모든 이해관계 기관들이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고민했던 문제였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최적 대안의 선택과 관련하여 독특성 문제로 판단이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고려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본 사례는 이선우·홍수정(2012), 김광구·이선우(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공갈등 조정의 참여 사례이다. 조정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사례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미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영역이어서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대화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또한 Kim & Ham(2015)의 실험 결과를 다자간 조정이라는 현실에서 검토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조정에 참여한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00여 년에 달하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¹⁴⁾ 두 개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성마을이었다.¹⁵⁾ 상대적으로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경우에 비해 위계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인들은 조정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비공식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대안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촉진적으로 조정을 운영했다. Kim & Ham(2015)에 따르면, 당사자가 위계주의이며, 쟁점

14) 국민대통합위원회 발간 “신화1리 갈등조정협의체(읽기자료)” 참조

15) 복면 신화리 생존권대책위원회 성명서(2013년 6월 10일) 참조

인식에 있어서 가치에 비해 이익을 주목할 경우 촉진적 조정이 협력의지를 높인다고 예견했는데, 이번 사례는 그러한 실험 결과가 다자간 조정의 현실에 부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인들이 입장 대신에 이해관심사에 기반한 대화를 추진했다. 1년 간의 5자 협의체 기간 중 주요 대화 내용은 집단이주가 타당하였다. 이는 양측이 집단이주를 쟁점으로 타당하다는 입장과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 근거를 주로 논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조정회의에서는 집단이주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제3차 회의에서 주로 다루고, 그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원하는 이유(이해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다자간 대화에서 협의나 협상보다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이해관심사에 기반한 협상의 성공요인인 승-승 해법의 도출이 다자간 조정에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표 4>를 통해 5개 기관들이 이해관심사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이해관심사를 가진 주민들과, 법과 원칙 및 절차적 정당성에 관심이 있는 산업부 및 울진군이 있다. 또한 법과 원칙, 절차적 정당성 외에도 오해 불식에 관심을 가진 한수원과 한전이 있었다. 최종합의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분석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최종합의시 고려된 이해관심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세 그룹의 이해관심사가 상당부분 고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사례는 BATNA가 이론에서 뿐 아니라 다자간 조정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생존권대책위원회, 한수원, 한전의 BATNA는 공히 피해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조정이 5개월 이내에 최종 합의의 형태로 종료됨으로써 피해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2년 내외)과 불확실한 결과(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에 비해 시간 및 결과의 통제 가능성에 있어 유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자간 조정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서 이 결과를 조정이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으로 공공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관계 기관들이 여럿인 다자간 갈등조정회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이 증가한다면, 그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의 축적은 중요성을 떨 것이며, 그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 (2015).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
- 김광구·이선우. (2011). 조정기제를 이용한 갈등해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25.
- 김두환. (2005).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전력정책 합의회와 한탄간담 조정소위를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3(1): 143-174.
- 김재근·채종현. (2009). 정책갈등의 제3자 갈등조정 효과: ‘한탄강담갈등조정소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7(1): 5-40.
- 박종화. (2001). 지역이해상충의 조정에 있어서 전략적 중재의 이용. 『한국행정논집』, 13(3): 615-641.
- 이선우·홍수정. (2012). 송·변전시설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 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183-212.
- 정정화. (2012). 조정을 통한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1-24.
- 하타무라, 아베, 후치가미. 2015. 『안전신화의 붕괴』.
- 함효상·현승현. (2013).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3): 451-492.
- Edwards, Harry T. (1986).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anacea or Anathema? *Harvard Law Review*. 99(3): 668-684.
- Fisher, Roger, William Ury, and Bruce Patton. (1987). *Getting to Yes*. Simon & Schuster Sound Ideas.
- Folberg, Jay and Alison Taylor. (1986). *Mediation: A Comprehensive Guide to Resolving Conflicts without Litigation*.
- Goldberg, Stephen B. (2003). (ed)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es*. Aspen Law & Business.
- Kim, Yung Wook and Ham, Seung Kyung. (2015). The Effects of Cultural Biases, Conflict Perceptions, and Mediation Types on Willingness to Negotiate in the Context of the Public Conflict - An Case of the Miryang High-Voltage Transmission Tower Conflict Crisis. *Crisisonomy*. 11(3): 39-62.
- Mehrabian, A.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Transaction Publishers.
- Moore, C. W. (2003).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3rd(ed). San Francisco: Jossey-Bass.

- Susskind, L. and J. Cruikshank. (1987). *Breaking the Impass: Consensual Approaches tor Resolving Public Disputes*, New York: Basic Books.
- Ury, W. L., Brett, J. M., & Goldberg, S. B. (1988). *Getting Disputes Resolved: Designing Systems to Cut the Costs of Conflict*. Jossey-Bass.
- Wall, J. A., Stark, J. B. and R. L. Standifer. (2001). Mediation: A Current Review and Theory Developmen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3): 370-391.
- Winslade, John and Gerald Monk. (2000). *Narrative Mediation: A New Approach to Conflict Resolution*.

전 형 준: 2004년 미주리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논문: Four Epidemics in the U.S. Media: Agenda-Setting of Health Issues),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갈등 커뮤니케이션, 과학보건 커뮤니케이션, 위험 커뮤니케이션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 “An Analysis of Risk Communication: A Case Study of MERS-CoV in Korea”(2016),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일방 당사자 중심의 해결: 갈등코칭의 연구 현황과 내러티브 방식의 갈등코칭 적용을 중심으로”(2016), “An Analysis of Mediation Communication for Public Conflict: Focusing on the Siting Conflict of Buk-Ansan Sub-Station”(2016) 등이 있다(samjeon2000@hanmail.net).